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87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김미애・이만희・백종헌

김선교 • 곽규택 • 고동진

서명옥 • 서지영 • 주진우

이인선 • 안상훈 • 권영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,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특히,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 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 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 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 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4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중 "90일로"를 "180일로"로 하고, 같은 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절차 등에"를 "절차,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"로 한다.

⑥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 이 경우 유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한다. ⑦ 국가는 제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가족돌봄휴직등 급여"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등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.

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직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

제37조제2항제6호 중 "제22조의2제6항을"을 "제22조의2제9항을"로 한다.

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(가족돌봄휴직등 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6항 및 제7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사용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	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③ (생	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	4
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	
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	
1.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	1
최장 90일로 하며, 이를 나누	<u>180일로</u>
어 사용할 수 있을 것. 이 경	
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	
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	
다.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⑥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</u>
	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
	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
	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
	은 유급으로 한다. 이 경우 유
	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연
	<u>간 최장 90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⑦ 국가는 제6항에 따른 가족
	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

<신 설>

⑥ ~ ⑨ (생 략)

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

사용한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
람에게 그 휴직 또는 휴가기간
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
는 금액(이하 "가족돌봄휴직등
급여"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
다.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등 급
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
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
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
서 분담할 수 있다.
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돌
봄휴직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
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
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
$\underline{9} \sim \underline{\mathbb{0}}$ (현행 제6항부터 제9
항까지와 같음)
<u> </u>
<u>절차, 가족</u>
돌봄휴직등 급여의 지급기간
<u>및 절차 등에</u>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 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(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7. ~ 9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제39조(과태료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략)

<신 설>

- 9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22조의2제9항을</u>
7. ~ 9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

- 9. (현행과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여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

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

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